2014.10

강 원 원 주
혁 신 도 시
A - 2 블 록
10년 공공임대

GANGWON WONJU A-2BL

푸른숨
강원원주혁신도시

푸른숨은 강원혁신도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분양홍보관 위치도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36

분양 문의
LH콜센터 | 1600-1004
분양홍보관 | 033-735-6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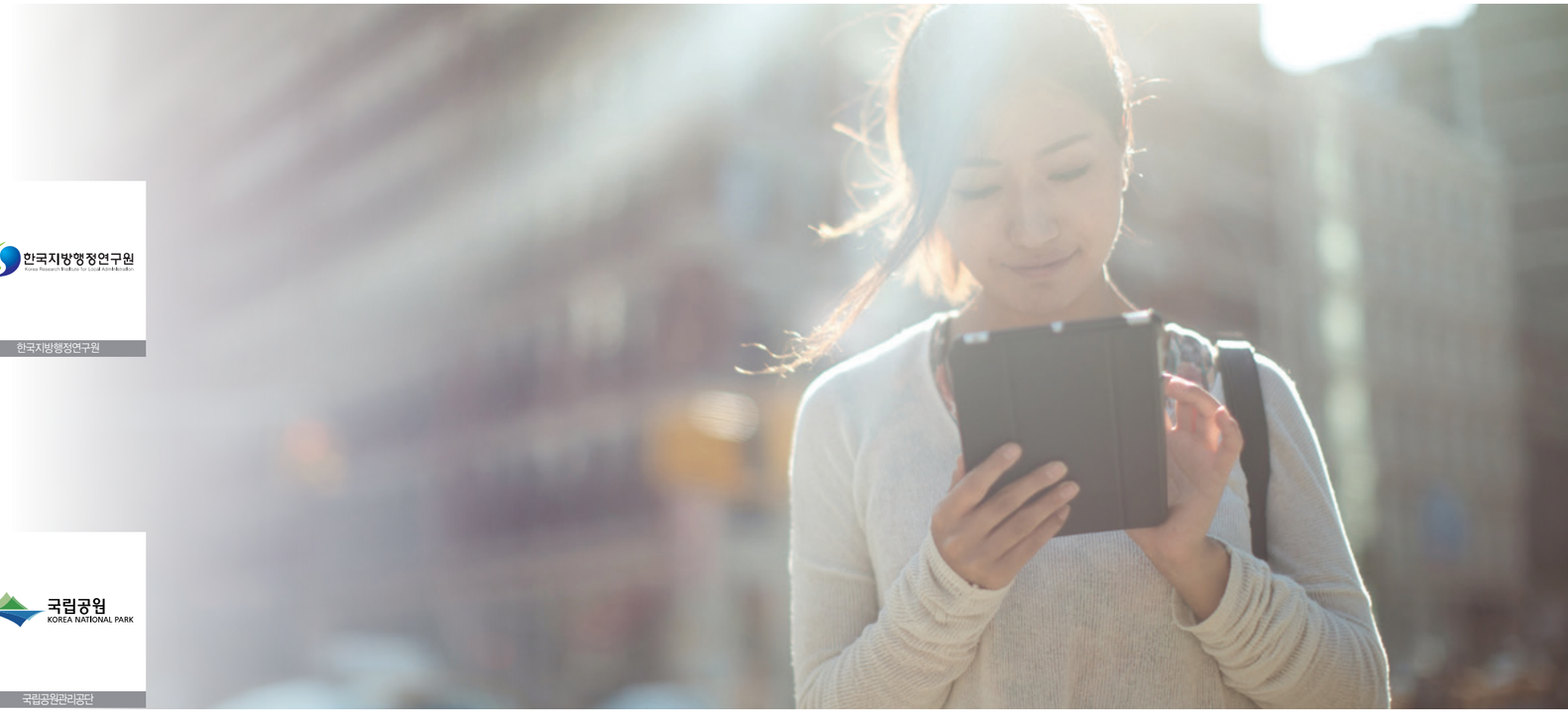
사이버 견본주택 | www.lhwja2.c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원주혁신도시
A-2블록 10년공공임대
GANGWON WONJU A-2BL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12개 공공기관이 모이는 **강원원주혁신도시!**
삶의 수준도, 미래 비전도 강원원주가 중심이 됩니다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 내 옆의 사람을 만나 사랑과 믿음을 쌓고, 무한한 꿈을 품고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꿈을 구체화 하고, 그 꿈은 한 폭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쉽게 일하는 곳을 오가고, 살고 있는 그 곳에서 교육, 쇼핑, 문화가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됩니다. 12개의 공공기관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자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까지 –
이 모두가 가능한 강원원주 혁신도시를 만난 오늘이 당신 인생의 새 날입니다!

Contents

03_프롤로그 04_지역조감도/교통망도 06_지구조감도/토지이용계획도 08_단지조감도/조경배치도
10_시스템 12_인테리어 22_세대평면 25_주요마감재 26_단지배치도 27_동호배치도 28_입주자모집안내

※ 본 카탈로그의 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 항목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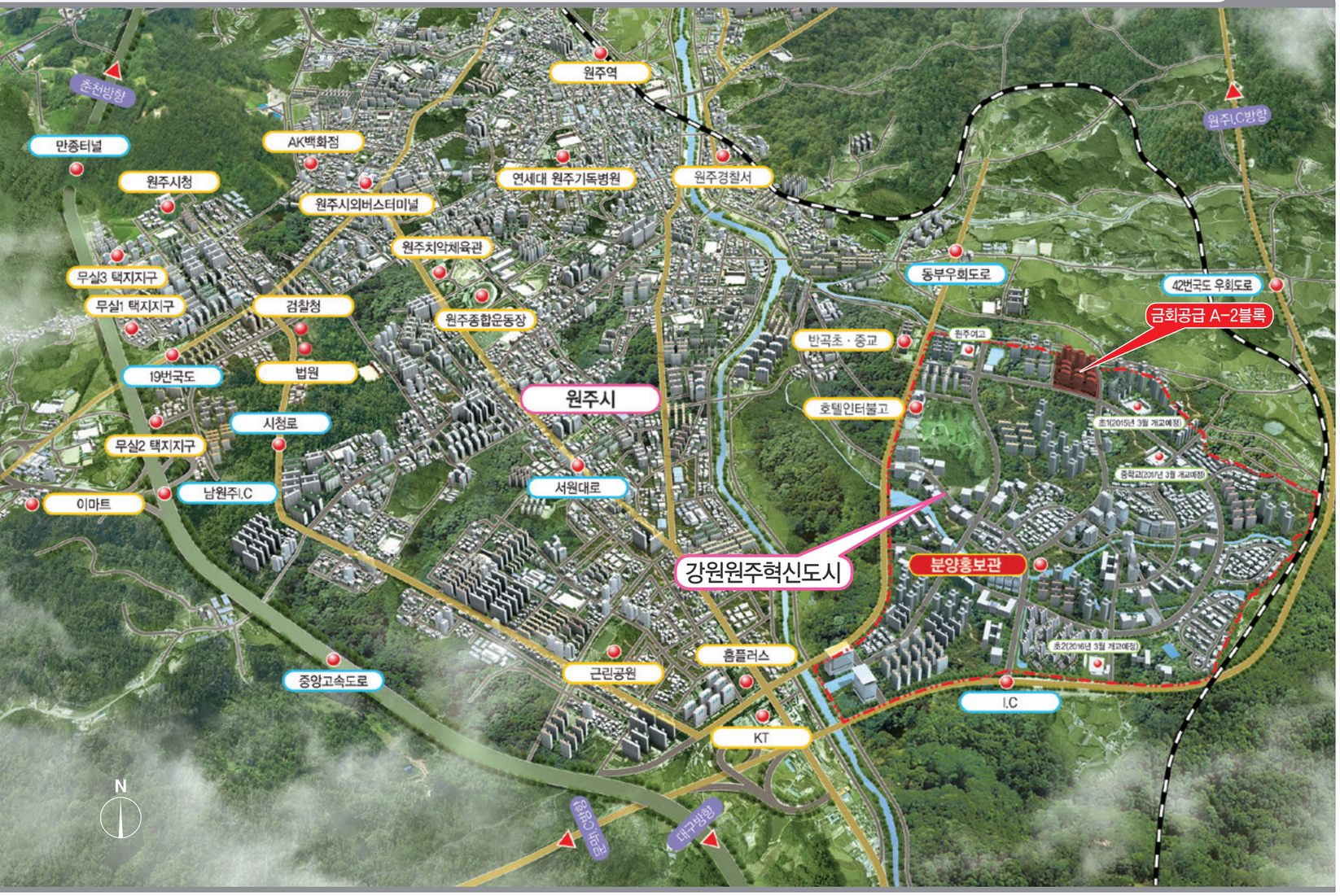
BEST LOCATION | 지역조감도 · 교통망도

건강 · 생명 · 관광도시 강원원주혁신도시 푸른숨

교통과 생활편익, 그리고 교육과 미래가치까지 내일이 기대되는 살고 싶은 혁신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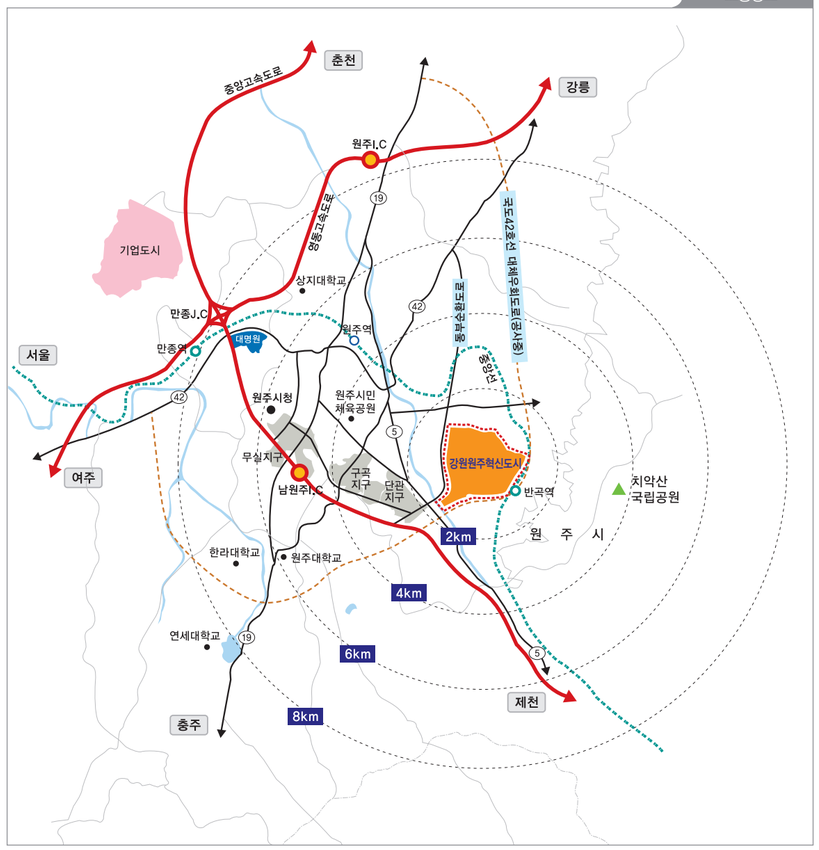
12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개발가치가 극대화 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삶을 더욱 쾌적하게 하는 치악산의 풍부한 자연환경까지 혁신도시가 원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역조감도



※ 상기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망도



::이전 공공기관의 미래가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2개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 이전으로 개발가치가 극대화 됩니다.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 · 생활 인프라::

2013년 개교한 원주여고 및 지구 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개교 예정이며 원주중 · 고, 반곡초 · 중, 원주여중, 단구중, 치악고 등 최고의 학군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등 6개 대학이 인접해 있으며, 홈플러스, AK플라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지구에 인접해 있습니다.

::편리하고 뛰어난 교통 인프라::

청량리~원주역 중앙선 복선전철 2012년 9월에 개통 되었으며, 판교~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2016년), 성남~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 원주~제천간 중앙선 복선 전철(2018년)이 개통예정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 인프라::

지구 인근에 치악산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지구내 퍼블릭 골프장 등 25% 이상의 공원 · 녹지가 있어 365일 쾌적한 자연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남원주 IC


원주시청


반곡역



지구조감도

GREAT VISION 지구조감도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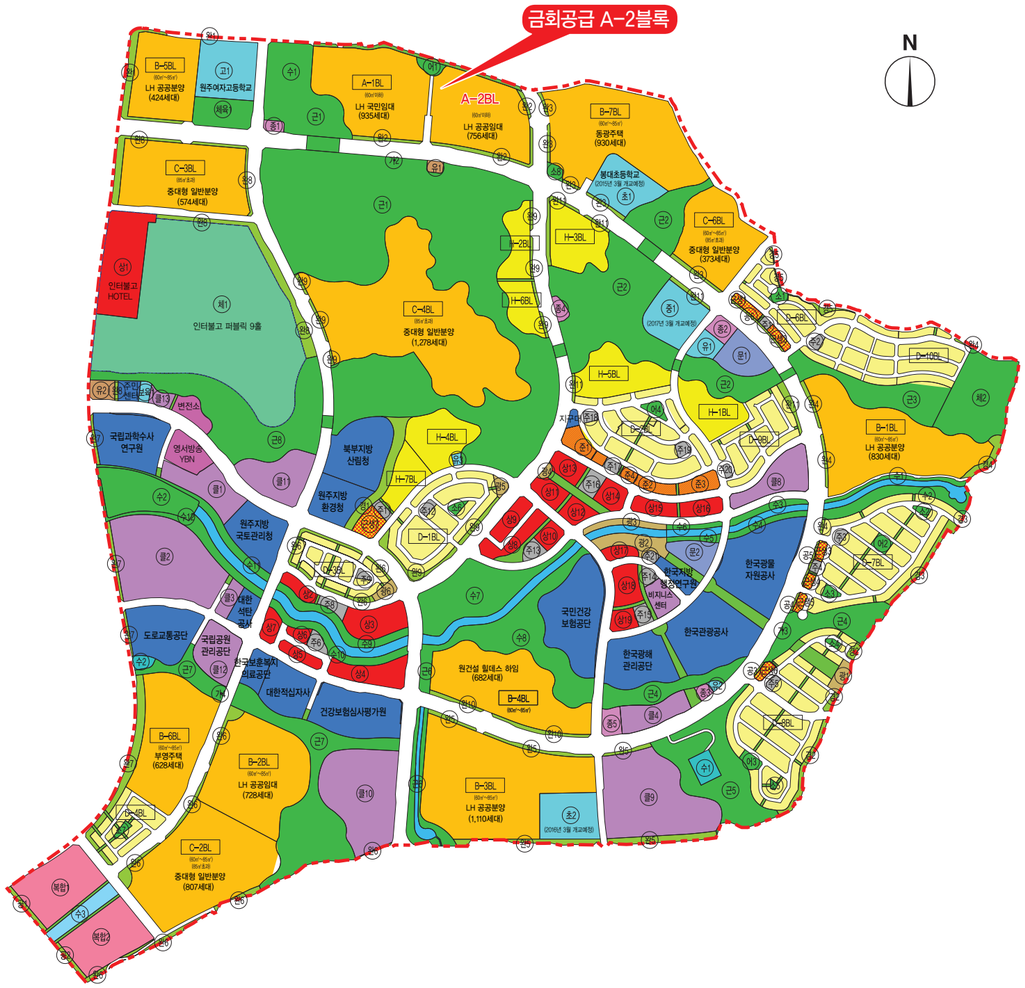
녹색도시, 교통도시로 새롭게 탄생하는 원주혁신도시 푸른숨

그대가 살고 싶은 곳 –
눈부신 삶이 강원원주혁신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교통 · 교육 · 자연을 모두 갖춘 주거단지
기다려온 시간만큼 더 큰 웃음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미래가치를 누리십시오.

※ 상기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범 례

이전공공기관	준주거	경관녹지	전기공급설비	고등학교
산학연 클러스터	근린생활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보육시설
상업 · 업무	근린공원	하천	가스공급설비	공공청사
복합용지	어린이공원	도로	방송 · 통신시설	문화 ·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필지형단독주택	소공원	보행자도로	주유소	종교시설
블럭형단독주택	수변공원	주차장	유치원	유수지
공동주택(APT)	체육공원	광장	초등학교	체육시설
공동주택(연립)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	중학교	원주시 사업시행구역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및 설립계획보류(취소)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햇살과 바람, 푸른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강원원주혁신도시에서 생활의 여유와 행복을 느껴보세요

쾌적한 단지배치,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놀이공간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 및 조경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외관, 색채, 조경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통풍, 채광, 조망권 등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망도



강원원주혁신도시 A-2블록 총 756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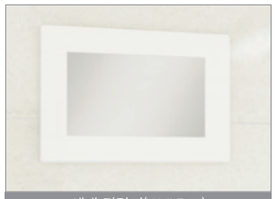
51A 확장형 200세대 | 59A 확장형 479세대 | 59B 확장형 77세대

::쾌적한 단지설계:: 채광, 통풍,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주민공동시설::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친목도모, 다양한 문화활동을 돕는 힐링 공간입니다.
::입주민휴게소:: 입주민 중심의 휴게시설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과 아이들의 감성과 지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공간입니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세대 단말기(Wall Pad)


무인택배보관함


CCTV


주방TV폰

Digital System

첨단 디지털시스템으로 삶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드립니다

- **홈네트워크 시스템 |** 외부에서 휴대폰 및 인터넷으로 조명, 가스밸브차단, 난방제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방TV폰 |** 주방에서 TV시청, 라디오 청취, 현관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주방TV폰이 설치됩니다.
- **CCTV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원격검침시스템 |** 검침원 방문없이 전기 · 급수 · 가스의 사용량을 자동검침하여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 배달물품을 입주자와 배달원이 직접적인 대면 없이 수령 또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무인경비시스템 |** 공동현관 이용시 카드나 비밀번호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 **디지털도어록 |** 디지털도어록을 현관문에 설치해 출입시 열쇠 없이 카드나 비밀번호로 문의 개폐가 가능하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 **차량출입통제시스템 |** 입주자의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주자의 차량은 통과하고 외부차량은 통제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 **디지털 방송 및 위성TV 수신시스템 |** 디지털 방송은 물론, 무궁화 위성 5, 6호(KBS1, EBS+1, EBS+2, EBS-e, OUN)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전원시스템 |** 한전 정전 시에도 세대내 거실벽부등, 보일러 가동 등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진과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써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레인지후드


음식물 탈수기


절수형 페달 밸브


비데

Well-Being System

머물수록 편안함과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실내를 창조합니다

- **실내환기시스템 |** 창문을 열지 않아도 필터를 통해 신선한 외부공기 도입이 용이한 천장형 환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음식물탈수기 |** 싱크대에 음식물 탈수기를 설치하여 주방을 항상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싱크용절수기 |** 발로 조절할 수 있는 절수기를 설치하여 더욱 편리하고 물 사용량도 절약됩니다.
- **디지털온도조절기 |** 거실 및 침실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각 실별로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비 데 |** 청결과 위생을 위한 비데 설치로 한층 격조 있는 욕실환경을 만들어 갑니다.(공용욕실)
- **레인지후드 |** 요리로 인한 냄새 등을 배출하는 고품격의 침니형 후드로 주방환경에 쾌적함이 더해집니다.
- **가스쿡탑 |** 빌트인 4구 가스쿡탑으로 한꺼번에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 생활의 편리함을 드립니다.

※상기 사진과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써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실 LIVING ROOM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공간 –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기에 삶이 더욱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내역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의 타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전시용으로 설치된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및 장식물 일체 등 기타 실제 시공과 관련없는 전시 및 인테리어 소품은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Living Room Point

::세대단말기:: 홈네트워크시스템이 적용된 터치스크린방식
::현관:: 안전과 기능을 겸비한 방화문 설치
::현관신발장:: 고급스러움과 편리함 추구
::거실 아트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
::일괄소등스위치:: 외출 시 현관에 부착된 스위치로 승강기 호출, 가스밸브 잠금 및 거실등, 침실등 등을 소등


세대단말기


59A 현관


59A 거실


59A 침실1


59A 침실2


59A 드레스룸

Bed Room Point

::드레스룸:: 아름다운 디자인의 화장대가 스위트룸 분위기를 연출
::드레스룸의류수납가구::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깔끔하게 수납
::강화마루:: 내구성이 우수한 마루바닥
::디지털온도조절기:: 방마다 따로 설치되어 편리하고 경제적

침실 BED ROOM

온화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아늑한 공간 –
심신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처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내역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의 타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전시용으로 설치된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및 장식물 일체 등 기타 실제 시공과 관련없는 전시 및 인테리어 소품은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방 DINING ROOM

사랑을 꽃 피우는 창조 공간 –
주방의 분위기가 즐거우면 가족 간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내역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의 타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전시용으로 설치된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및 장식물 일체 등 기타 실제 시공과 관련없는 전시 및 인테리어 소품은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Dining Room Point

::주방TV폰:: TV시청, 방문자확인, 현관문 개폐가 가능
::레인지후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음식물탈수기::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감소
::싱크수전절수페달:: 싱크수전을 발로 조절해 편리하고 경제적임

59A 주방



주방TV폰



가스쿡탑




59A 공용욕실


59A 공용욕실


59A 부부욕실


비상콜

Bath Room Point

::비데(공용욕실):: 가족의 위생과 청결 그리고 쾌적한 욕실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고급세면대::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
::거울수납장:: 욕실용품을 효율적으로 수납하여 깔끔하게 정리
::온도조절형욕실수전:: 편리하게 온도조절이 가능
::비상콜(부부욕실):: 위급상황시 경비실로 비상통보가 가능

욕실 BATH ROOM

하루의 피로를 푸는 편안한 휴식 공간 –
상쾌한 휴식의 기쁨이 활기찬 내일을 만듭니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내역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의 타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전시용으로 설치된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및 장식물 일체 등 기타 실제 시공과 관련없는 전시 및 인테리어 소품은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에서 누리는 생활 프리미엄

한발 앞선 라이프스타일, 세련된 공간미학!
가족이 숨쉬고, 휴식하고, 함께하는 공간들이 보다 쾌적한
강원원주혁신도시 A-2블록

GANGWON WONJU A-2BL



UNIT PLAN

51A

| 확장형 200세대 |
주택신청형 051.9500A

실속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설계 –

NATURAL SPACE

세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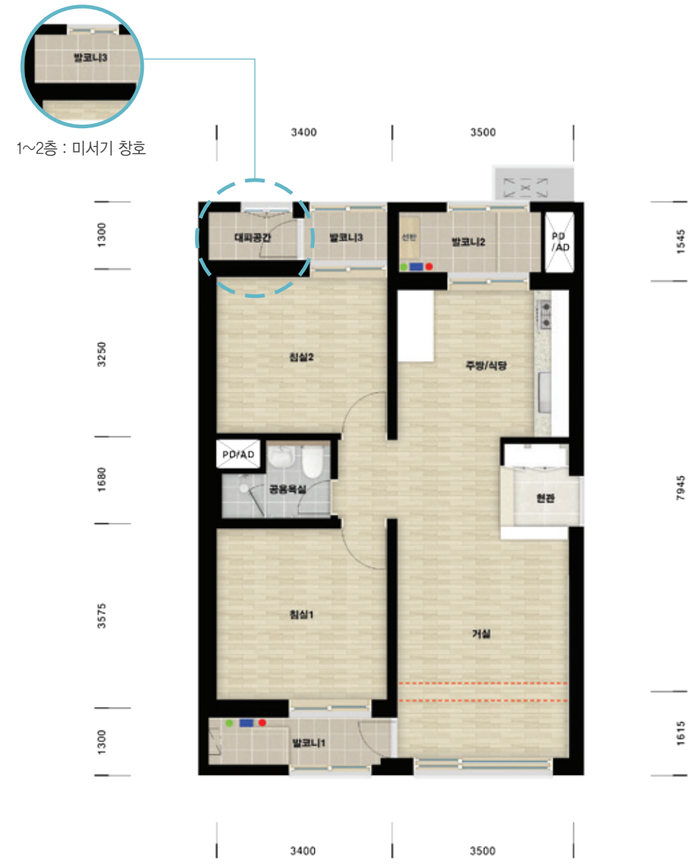
전 용 면 적	51.95㎡
주거공용면적	21.9539㎡
기타공용면적	4.4564㎡
지하주차장면적	24.1486㎡
계 약 면 적	102.5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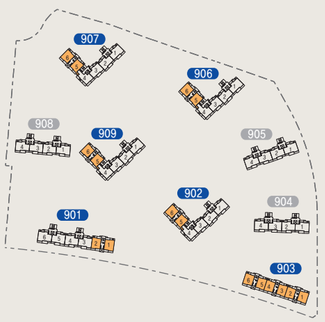
실별 면적

거 실	15.31㎡
주 방 / 식 당	9.89㎡
침 실 1	11.19㎡
침 실 2	10.05㎡
현 관	2.48㎡
화 장 실	3.03㎡

서비스 면적

발 코 니 1	10.07㎡
발 코 니 2 , 3	7.8㎡
대 피 공 간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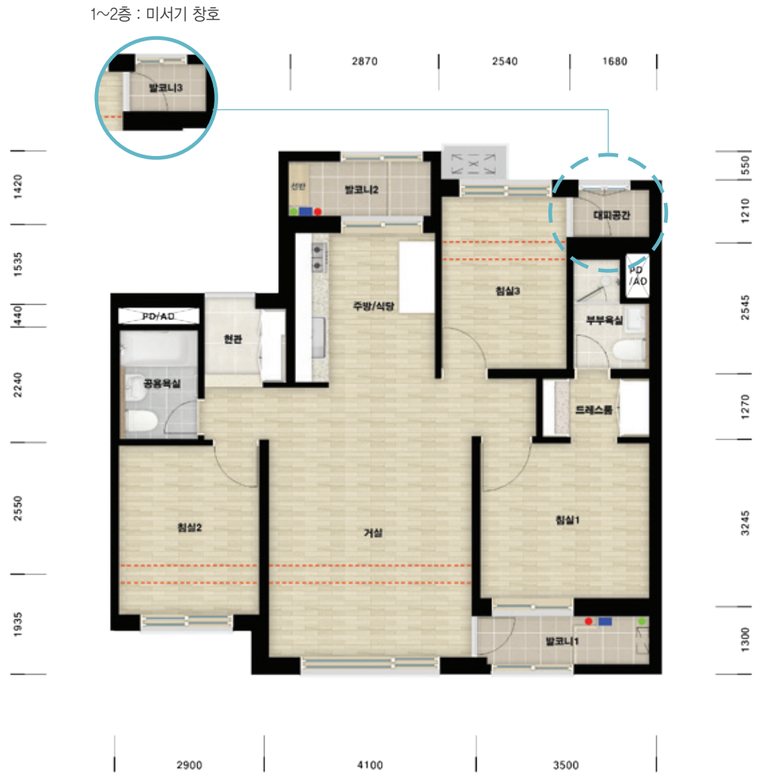


- 수전
- 바닥배수
- 우수

※ 본 면적은 법정계량단위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팜플렛 및 사이버 모델 하우스 마감재 색상 등은 인쇄상태 및 해상도의 영향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중심선(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외부치수 적용)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실별 면적의 복도면적은 거실면적에 산입

섬세한 디자인의 감각적인 공간 –

SENSITIVE EXPRESSION



- 수전
- 바닥배수
- 우수

※ 본 면적은 법정계량단위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팜플렛 및 사이버 모델 하우스 마감재 색상 등은 인쇄상태 및 해상도의 영향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중심선(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외부치수 적용)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실별 면적의 복도면적은 거실면적에 산입

UNIT PLAN

59A

| 확장형 479세대 |
주택신청형 059.8100A

세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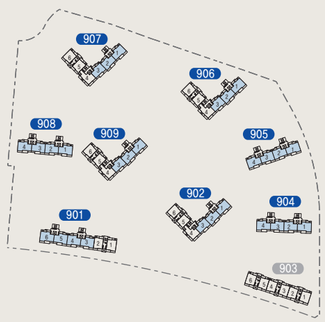
전 용 면 적	59.81㎡
주거공용면적	25.2755㎡
기타공용면적	5.1307㎡
지하주차장면적	27.8023㎡
계 약 면 적	118.0185㎡

실별 면적

거 실	17.66㎡
주 방 / 식 당	8.03㎡
침 실 1	10.37㎡
침 실 2	6.64㎡
침 실 3	5.59㎡
드 레 스 룸	2.76㎡
현 관	2.39㎡
화 장 실 1	3.41㎡
화 장 실 2	2.96㎡

서비스 면적

발 코 니 1	15.68㎡
발 코 니 2	8.39㎡
대 피 공 간	2.03㎡



UNIT PLAN

59B

| 확장형 77세대 |
주택신청형 059.9600B

매력적인 분위기의 스타일리쉬한 공간 –

STYLISH MODERN

세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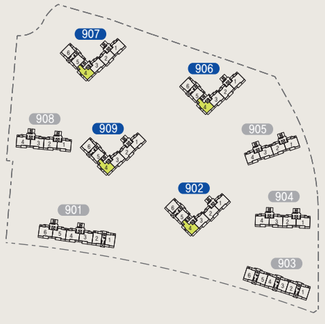
전 용 면 적	59.96㎡
주거공용면적	25.3389㎡
기타공용면적	5.1435㎡
지하주차장면적	27.8720㎡
계 약 면 적	118.3144㎡

실별 면적

거 실	17.77㎡
주 방 / 식 당	7.58㎡
침 실 1	10.42㎡
침 실 2	6.2㎡
침 실 3	6.33㎡
드 레 스 룸	2.01㎡
현 관	2.88㎡
화 장 실 1	3.73㎡
화 장 실 2	3.04㎡

서비스 면적

발 코 니 1	10.83㎡
발 코 니 2	7.95㎡
발 코 니 3	4.12㎡
발 코 니 4	3.84㎡
대 피 공 간	2.27㎡





1~2층 : 미서기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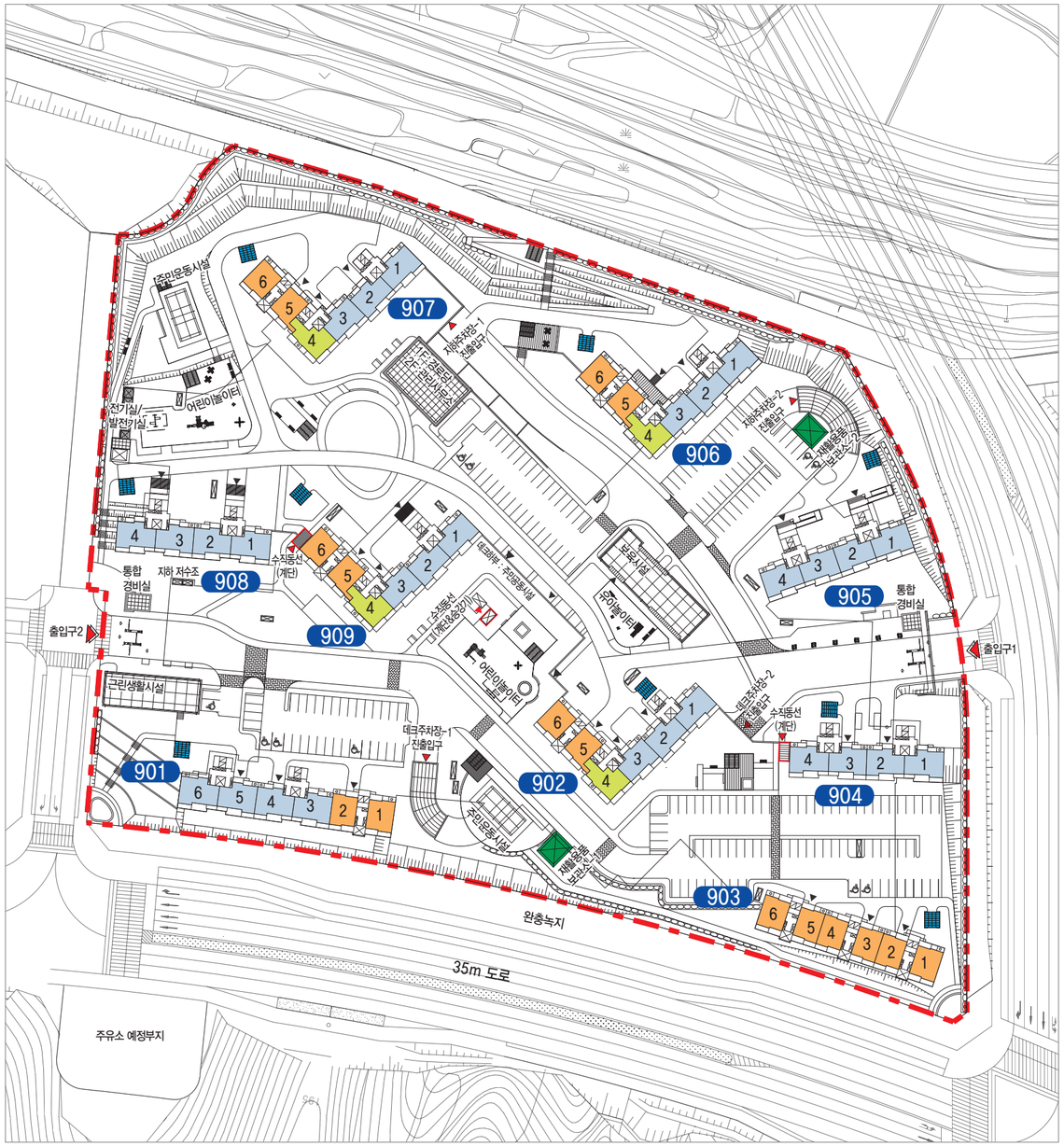


● 수전
■ 바닥배수
● 우수

※ 본 면적은 법정계량단위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 = 평)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팜플렛 및 사이버 모델 하우스 마감재 색상 등은 인쇄상태 및 해상도의 영향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중심선(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외부치수 적용)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실별 면적의 복도면적은 거실면적에 산입

OPTIONS OVERVIEW |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항 목		51A	59A·B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바닥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신발장	설치	설치
거실/주방	벽지/천정지	실크벽지	실크벽지
	아트월	폴리싱타일	폴리싱타일
	바닥	강화마루	강화마루
	주방벽	도기질 시유타일	도기질 시유타일
	주방가구 문짝	고광택도장	고광택도장
	주방가구 상판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주침실	바닥	강화마루	강화마루
	화장대	–	설치
침실	침실 문틀/문짝	PVC시트	PVC시트
	바닥	강화마루	강화마루
	벽지/천정지	실크벽지	실크벽지
욕실	벽	도기질 시유타일	도기질 시유타일
	바닥	자기질 시유타일	자기질 시유타일
	천정	PVC판넬	PVC판넬
비확장 발코니	바닥	자기질 시유타일	자기질 시유타일
	창호	합성수지제	합성수지제
주방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	침니형
	가스레인지	4구형 쿡탑	4구형 쿡탑
	음식물탈수기	설치	설치
	싱크용절수기	설치	설치
욕실설비	욕조(공용욕실)	투명펄 아크릴	투명펄 아크릴
	욕조수전(공용욕실)	온도조절(안마헤드)	온도조절(안마헤드)
	샤워수전(부부욕실)	–	안마헤드+레인형
	양변기	원피스(High 탱크형)	원피스형(High탱크)
	비데(공용욕실)	설치	설치
	거울수납장	2도어 슬라이딩형	2도어 슬라이딩형
	기타설비	잡지꽂이 겸 휴지걸이, 욕실코너선반	잡지꽂이 겸 휴지걸이, 욕실코너선반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세대 환기시스템(2종)		설치	설치
조명설비	조리대조명	아크릴글로브급	아크릴글로브급
	식탁등	유리글로브급(LED 램프)	유리글로브급(LED 램프)
	각실 조명기구	유리/아크릴글로브급	유리/아크릴글로브급
	거실벽부등	EL 등기구	EL 등기구
배선기구	현관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설치
	스위치, 콘센트류	경제형	경제형
정보통신설비	거실 세대단말기 (Wall pad)	설치	설치
	화장실 비상콜(부부욕실)	–	설치
	주방TV	설치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단지내설치	단지내설치



쓰레기분리수거함 재활용품보관소 환기탑

※ 상기 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단지 내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구획선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A-2블록 총 756세대

51A 확장형 200세대 59A 확장형 479세대 59B 확장형 77세대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51A	51A	59A	59A	59A	59A

901동 60세대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59A	59A	59A	59B	51A	51A

902동 110세대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51A	51A	51A	51A	51A	51A

903동 60세대

1601	1602			
1501	1502			
1401	1402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59A	59A	59A	59A	

904동 58세대

1901	1902				
1801	1802				
1701	1702				
1601	1602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59A	59A	59A	59A		

905동 68세대

2001	2002				
1901	1902				
1801	1802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59A	59A	59A	59B	51A	51A

906동 104세대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59A	59A	59A	59B	51A	51A

907동 110세대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59A	59A	59A	59A

908동 76세대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59A	59A	59A	59B	51A	51A

909동 110세대

강원혁신도시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강원혁신도시 내(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A-2블록 총 756세대**

알려 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14.10.31(금)**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4001206입니다.(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시 사용)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개관, 팜플렛 배포,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wja2.co.kr) 개관은 '14.11.01(토)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실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36), 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00)
- 해당주택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규정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호수의 70%를 특별 공급합니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의 특별공급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 이외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나,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 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60㎡이하 주택)으로 당첨 후 3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중 1층을 희망하는 분께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현장신청에 한함)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 · 계약체결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 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보유자산 등) 및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 및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14.12.1(월)~12.3(수))**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혼란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알림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우리공사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당첨자명단조회」 또는 ARS(1661-7700)로 조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등의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공급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V.신청일정 및 장소 ~ VII.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전 공공기관	신혼부부 · 생애최초 다자녀 · 노부모 · 기관추천	일반 1순위	일반 3순위			
일 정	'14.11.6(목)~7(금) 10:00~17:00	'14.11.10(월) 10:00~15:00	'14.11.10(월) 10:00~17:00	'14.11.11(화) 10:00~17:00	'14.11.12(수) 10:00~17:00	'14.11.27(목) 16:00 이후	12.1(월)~12.3(수) 10:00~16:00	'14.12.16(화)~18(목) 10:00~16:00
방 법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관추천자), 인터넷 신청(기관추천 외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 확인	방문 제출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장 소	공사 청약시스템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공사 청약시스템	공사 청약시스템	공사 청약시스템	공사 청약시스템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 공사 청약시스템(분양임대청약시스템) 주소 : http://myhome.lh.or.kr

-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신청건수,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인원수를 감안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이전 공공기관은 반드시 아래 협의 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이전 공공기관은 협의 참석 시까지 〈표3〉의 특별공급신청서 등 관련 현장 접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협의 일정 및 장소 : '14.11.10(월) 15:00 ~ , LH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주택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유형에 따른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년임대주택
-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결정
-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이자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Ⅰ 건설규모 및 공급대상

건설규모

■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10~20층 9개동 총 756세대(특별공급 68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블록	주택 유형	주택형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등	기관 추천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A-2	10년 공공 임대	합 계									756	529	22	34	45	22	11	22	71	–	48	
		51.9500A	2014001206(01)	51.95	21.9539	73.9039	4.4564	24.1486	102.5089	49	200	140	6	9	12	6	3	6	18	15	16	'16.12
		59.8100A	2014001206(02)	59.81	25.2755	85.0855	5.1307	27.8023	118.0185	56	479	335	14	22	29	14	7	14	44	20	28	
		59.9600B	2014001206(03)	59.96	25.3389	85.2989	5.1435	27.8720	118.3144	56	77	54	2	3	4	2	1	2	9	20	4	

※ 일반 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1층 세대수 : 51.9500A는 16세대, 59.8100A는 28세대, 59.9600B는 4세대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함.(㎡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고 잔여주택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에게 특별공급하며, 이후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 및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발코니유형은 전 세대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세대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 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A-2	51.9500A	200	26,500,000	4,000,000	22,500,000	310,000
	59.8100A	479	35,000,000	5,000,000	30,000,000	360,000
	59.9600B	77	35,000,000	5,000,000	30,000,000	360,000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0~20%)과 잔금(80~90%)으로 구성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에 따른 차등은 없음.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 체납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 8.0%(변경가능)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환불받음.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안내할 예정임.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전환보증금 안내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이며, 전환요율은 공고일 현재 6%이나 이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최초 임대조건		최대 전환 내역(예시)		최대 전환후 임대조건(예시)	
		임대보증금 (A)	임대료 (B)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D)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A+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B-D)
A-2	51.9500A	26,500,000	310,000	26,000,000	130,000	52,500,000	180,000
	59.8100A	35,000,000	360,000	35,000,000	175,000	70,000,000	185,000
	59.9600B	35,000,000	360,000	35,000,000	175,000	70,000,000	185,000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신청을 접수 받으며, 수정 계약체결 일정 등 전환보증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할 예정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적용기준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주택형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A-2	51.9500A	108,300	16,240	92,059
	59.8100A	125,141	18,698	106,443
	59.9600B	126,794	18,744	108,049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5,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해당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자산기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의 경우에만 적용

-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입주자모집공고일('14.10.31) 현재 아래의 〈표1〉「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
  -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는 세대주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 + 토지) 가액의 총합 및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보유자산 확인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함.
-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표1〉

구 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건물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하는 분으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하는 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990,000원 이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단, 아래의 경우 제외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	

구 분			가액산정 기준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가액 산정 :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 토지가액 산정 : 토지가액 = 소유면적 X ㎡당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물 · 토지) 공시지가 등 확인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자동차가액 산정 : 자동차가액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단,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을 산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http://www.kidi.or.kr) → 공시 및 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조회' 메뉴 클릭 → 차종별 세부사항(제작사, 차종 등)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 · 등록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 :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3년식 자동차를 201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소득기준

■ **적용대상 : 특별공급신청자(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일반 공급 신청자**

■ **적용범위**

공급유형	소득기준
생애최초, 일반공급,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중 배우자 소득이 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적용받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여야 함

■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소득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

■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외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포함입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만 임신 중인 태아가 가구원수로 인정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 직계 존 · 비속 소득도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 분	3인이하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4,606,216원이하	5,102,802원이하	5,357,446원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527,459원이하	6,123,362원이하	6,428,935원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357,44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75,615원) 추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일괄 조회할 예정**이며, 조회대상의 소득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에 산정한 것으로 함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이상 직계존 · 비속)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며, 조회대상의 소득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항 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가구원수 산정기준

구 분	가구원수 산정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산정(단,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및「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단,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혁신도시 주택건설지역(원주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의하여 과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함.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강원혁신도시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입주(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올라있는 경우를 말함)한 분
    · 강원혁신도시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지방이전공공기관종사자등에관한주택특별공급운영기준」제7조)
  –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 · 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 · 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각 주택형별 순위 내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때는 추첨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에게 특별공급하며, 이후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혁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당첨자 선정방법**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며,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청약 신청건수,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인원수를 감안하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 신청한 이전 공공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협의 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 불참 시 협의사항 일체를 공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전 공공기관은 협의 참석 시까지 〈표3〉의 특별공급신청서 등 관련 현장 접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협의 일정 및 장소 : '14.11.10(월) 15:00 ~ ,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 청약한 주택형에 대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따라 당초 청약 신청한 건수보다 적은 건수로 당첨될 수 있음.
  ※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청약한 건수보다 적은 건수로 당첨될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타 주택형에 대한 당첨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전 공공기관은 주택형별 당첨건수가 청약 신청건수보다 적을 것을 감안하여 타 주택형에 대한 청약 신청 대안을 가지고 협의에 참석해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으로서 아래의 청약저축 요건을 충족한 분
  – 기관추천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 해당기관 : 국가유공자(춘천보훈지청), 장애인(강원도 경로장애인과), 지자체 철거민(원주시 건축과),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제대군인(춘천보훈지청), 중소기업근로자(강원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사상자(강원도청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청약저축 요건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은 청약저축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추천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신청일(2014.11.10)에 접수현장을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 ·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14.11.10.(월)')**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하를 충족한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포함입니다.(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아래의 순위(1순위 → 2순위), ②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표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아래 순차(미성년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동일 순위 (1, 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하는 분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아래 조건(1~6)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 불가)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하는 분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포함합니다.(단,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95.11.1.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95.11.1.이후 출생자)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08.11.1.이후 출생자)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①또는② 하나만 인정	5	3세대 이상 ①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으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②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 기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 · 도 · 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순으로 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하는 분), 1주택 소유하는 본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존 · 비속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의 〈표2〉"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 신청, 미 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 → 3순위), ②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표본상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1순위에 한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 결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 신청, 미 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2〉「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청약저축 유무와 관련 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명단 관리됨)

-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횟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해 당 사 항
무주택 세대주기간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무주택 기간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는 "Ⅳ.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세대주 인정기간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함)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분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에 의거,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 청약대상자는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1순위 접수 미달시에도 3순위자 접수일에 1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자 접수 결과 마감 시 3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공사 홈페이지 안내 예정)**

Ⅳ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제1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하는 분(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매매 ·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 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 유인물 · 전화 ·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06.05.08일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에 한함)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1층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임대조건의 블록별 및 주택형별 층별 공급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하는 분이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 분	설 명
신청자격	청약 신청하는 분(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하는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신청방법	희망하는 분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 공급 등) 신청일자에 현장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자격 해당 시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자격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 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불가)하나 모두 당첨권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 동일한 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하는 분 및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 일반 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 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함.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2〉「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최종 순차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 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된 분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예비당첨자는 주택형별 일반 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2〉「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최종 순차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당첨자 중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미 신청, 미 계약 동 · 호는 일반 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되,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하며, 예비 당첨자의 경우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 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며, 예비당첨자가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강원혁신도시 판매보상부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착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 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할 때에는 동 · 호수 추첨에 참가의사 확인 또는 계약체결 안내를 유선(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으로 확인하고,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오 기재, 통화불가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 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됨.
- 예비 당첨자는 당첨 서류제출 기한 내('14.12.1.(월)~12.3(수))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시 향후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예비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 공급 시, 예비 순번에서 제외함.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이전기관 종사자 등 1,2,3순위 특별공급	'14.11.6(목) ~ 11.7(금)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이전기관 특별공급	'14.11.10.(월) 10:00~15:00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36]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11.10.(월)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기관추천 특별공급	'14.11.10.(월) 10:00~17:00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36]
일반공급	• 1순위	'14.11.11.(화)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3순위	'14.11.12(수) 10:00~17:00		

신청 유의사항

- 분양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1,3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당첨 후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는 분일 경우 일반 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일반 공급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 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주택형별 접수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1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접수 마감**('14.11.10(월))**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 공급 접수여부는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하는 분은 방문(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한 분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Ⅵ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에 따른 혼잡방지와 편의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 이전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 인터넷 신청방법

구 분	대 상
신청대상	• 이전기관 종사자 등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 일반 공급(1순위, 3순위) ※ 인터넷 신청 불가자(방문 신청 대상자) :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
신청방법 및 절차	•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등,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해서 우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접속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해서 우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접속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하는 분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보호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시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원주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해야 함.
- 주민등록표상 주소 입력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표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또는 계약해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한 분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에서 가입한 분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에 가입한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 외에 가입한 분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방문신청 :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방문신청 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접수시간 :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신청 장소 : LH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36)

■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접수서류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또는 계약해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표3〉방문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기관추천 특별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공급유형별 필수 준비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① 특별공급신청서	현장접수 장소에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 시)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 시)	신청하는 분 구비
				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발급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만 해당 ※ 발급 가능일 : 공고일 익일부터 ※ 발급 용도 : 특별(기타)용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대상자 중 1층 배정 희망자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현장접수 장소에 비치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발급 용도 : 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순위 신청자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도장(서명가능)	신청하는 분 구비
		배우자 신청 시		① 본인(신청하는 분)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본인(신청하는 분) 도장	신청하는 분 구비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공 통	①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하는 분 구비
			인감증명 방식	② 위임장	현장접수 장소 구비
				③ 본인(신청하는 분) 인감증명서	신청하는 분 구비
				④ 본인(신청하는 분) 인감도장	
			서명확인 방식	① 본인(신청하는 분)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신청하는 분 구비
				② 본인(청약자)서명사실 확인서	
	기타	1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추가제출)		①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현장접수 장소 비치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장애인 확인)	신청하는 분 구비
				③ 주민등록표등본(만65세 노약자 확인)	
이전 공공기관				① 특별공급신청서	현장접수 장소 비치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신청하는 분 구비
				④ 위임장(법인임감날인) 및 신청자 신분증	

※ 위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등 위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Ⅶ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안내

■ 일정 및 장소

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 서류제출	계약체결
당첨자	'14.11.27(목) (16:00이후) 분양홍보관, LH홈페이지	'14.12.1(월) ~ 12.3(수) (10:00~16:00) LH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14.12.16(화)~12.18(목) 10:00~16:00 (장소 : LH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예비 당첨자	'14.11.27(목) (16:00이후) 분양홍보관, LH홈페이지	'14.12.1(월) ~ 12.3(수) (10:00~16:00) LH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는 당첨 서류제출 기한 내('14.12.1.(월)~12.3(수))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예비 당첨자 계약체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비 당첨자도 당첨 서류제출기간에 일괄 당첨서류를 제출받으므로, 예비 당첨자는 당첨 서류제출 기한 내('14.12.1(월)~12.3(수))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시 향후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예비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 공급 시, 예비 순번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예비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약체결 기간을 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며,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함.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한 분은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한 분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자산보유 검색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자산보유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당첨자의 각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향후 자산보유 검색결과 자산보유기준 이상으로 판명된 경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로 판단되거나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우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14.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우리공사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불가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분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하는 분으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해야 함.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④ 제출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입한 분
		○	⑤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용도: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		⑥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이전기관 종사자 등	○		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③ 서약서	본인 및 기관의 확인	• 「지방이전공공기관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 2호 및 별첨 서식
기관추천-장기복무제대군인	○		① 병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 6회 이상 가입자 중 춘천보훈지청에서 선정된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미혼 자녀 확인 필요시(만19세 이상 자녀 해당)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4〉 참조)**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4〉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서류구분	해당여부	해당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⑤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직계존속 /본인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의 직계존속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⑧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계약 불가함.

구 분	계약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① 계약금(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계약서에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아파트계약위임용)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계약금 납부 영수증은 당첨자에게 당첨 발표 후 안내 예정

Ⅷ 유의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특별공급대상자별, 순위별(제1 · 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하는 분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 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 표시 후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 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소명기간종료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강원지역본부 강원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로 방문 또는 유선 · 서면통보(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00번지(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입니다.

구 분	LH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방법
10년임대주택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강원혁신도시 분양정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영동고속도로 원주IC,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원주역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입주 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푸른숨 LH10단지(A1블록), 동측에 봉대초등학교(개교예정), 남측에 근린공원, 북측에 오리현천 및 보행자도로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동측도로는 제한속도 60km/h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운영될 예정임
  - 단지 동측 인접도로(35M)와의 고저차는 약3~6M로 단지가 높고 단차발생은 사면마감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완충녹지는 택지조성사업자 시공분)
  - 단지 서측 인접도로(18M), 보행자도로(8M)와의 고저차는 약4M로 단차발생은 사면마감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인접도로(35M)와의 고저차는 약4M로 단차발생은 사면마감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완충녹지는 택지조성사업자 시공분)
  - 단지 북측 보행자도로(8M)와의 고저차는 약8M로 단차발생은 사면마감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자사전방문행사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멀티프로그램실, 작은문고, 주민카페]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컴퓨터, 책장,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및 시설물 배치 등 세부계획은 향후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산정 후 설치 될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등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각종 시설물, 식재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경비실은 총 2개소(출입구1,2 부근)설치 예정이며, 문주는 출입구1인 동측 출입구에만 설치됨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지상에는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2대가 포함하여 배치되어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764대이며(지상주차 : 191대(근린시설 2대 포함), 지하주차 : 573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출입구2(908동 정면)에, 보육시설은 902, 905, 906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908동 4호라인 배면에 환기탑이 설치됨
- 같은 동의 호(라인)별 최상층의 층수 차이로 인하여 저층라인(호)의 지붕층에 주방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의 음식냄새 등이 인접세대로 흘러갈 수 있음
- 옥외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각 동별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함
- 909동 옥상에는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나 단지여건상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외부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 · 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밸브 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경비실 등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 ·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경사가 큰 단지 특성상, 지상에 출입구1,2를 연결하는 차량통행로가 없어 출입구간 차량 이동은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이동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높이 2.3m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불가하니, 입주를 위한 이사나 택배차량, 소방차 비상출동 시 등은 아래와 같은 출입구를 사용해야 함**
  (출입구1 사용[동별 출입구기준] : 902,904,905,906,907,908,909동,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관리사무소 / 출입구2 사용[동별 출입구기준] : 901,903,근린생활시설)
- **상기 사유(단차이)로 인해 단지 상하부를 연결하는 보행자도로가 없어, 단지 내 위치한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함**
- **고저차가 큰 단지 특성상 출입구 및 단지내 도로는 일정부분 경사가 발생됨**
- **본 단지의 단지명은 '푸른숨 LH9단지'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905동을 제외한 모든 동은 동출입구에서 1개층을 올라가야 1층세대가 위치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층세대를 구매하고자하시는 분은 구매 전 세대진입경로를 확인해야 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901동 3호세대의 경우, 대피공간이 타 세대에 비해 실 사용면적이 작음**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번호,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3개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급기용 환기유닛은 발코니 천정 혹은 기타장소에 설치되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됨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외부에 설치공간이 제공되며 창호를 통한 소음 및 열기가 유입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 매립 설치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거실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모델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후 설치 예정임
- 거실 및 주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 및 문짝상부판 모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임
- 보일러는 안방 발코니(세탁실)에 설치되며 별도의 구획 및 가림막(창호) 등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마루재 및 벽타일 등의 고유문양 및 색상은 실제시공 시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점검용홀이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의의 일부창호는 개폐가 불가하며 개폐가 가능한 창호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목재문, 플라스틱창호 및 타일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팜플렛은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종류 및 위치

블 록	종류	위치	면적	비고
A-2BL	관리사무소	906,907동 사이	231.81㎡	MDF실 : 31.50㎡ 방재실 : 51.00㎡
	경로당	906,907동 사이	141.84㎡	
	주민공동시설	909동 데크 하부 (주민까페,멀티프로그램실,작은도서관 등)	678.6㎡	
	보육시설	902,905동 사이	262.34㎡	
	유아놀이터	보육시설 앞	1개소	
	휴게소	906동 측면 1개소 902동 904동 사이 1개소	2개소	2개소
	어린이놀이터	907,908동 사이 1개소 902,909동 사이 1개소	965.44㎡	2개소
	근린생활시설	단지 출입구2 부근	200.55㎡	
	경비실	출입구1 앞 출입구2 앞	52.08㎡	2개소
	쓰레기수거함	동 인근 동별 1개소	9개소	9개소
	재활용품보관소	902,906동 앞	51.84㎡	2개소
	전기/발전기실	지하주차장 1개소	270.52㎡	
	지하주차장	데크층, PIT층	20,293.19㎡	

기타사항

- 15인승 일반형(10층용부터 20층용까지)이며, 엘리베이터 속도는 105m/min입니다.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은 2층용, 60m/min입니다.
- 용적률 : 149.88%, 건폐율 : 14.91%, 녹지율 : 31.69%
- 주차장 대수 : 총 764대(세대당 1대)(장애인 48대)
  • 지상주차장 : 189대, 지하주차장 : 573대(장애인 48대), 상가 : 2대(장애인 1대)
- 지하주차장 층수 : B1층~B2층
  • 901,903동 : B1층, 902,904~909동 : B2층
- 지하주차장 형식 : 주동통합형
- 지하주차장입구 높이 : 2.3m(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샷시 창호 관련
  • 이중창 등 설치여부 : 확장된 실(이중창 설치), 비확장된 실(단창 설치)
  • 발코니 합성수지 이중창 (내)22mm 로이복층유리, (외)22mm 로이복층유리
  • 발코니 합성수지 단창 22mm 로이복층유리
  • 개폐방식

창호구분	발코니 창호	대피공간 창호	비고
개폐방식	슬라이딩	1~2층 : 슬라이딩 3층이상 : 양여닫이(내부)	

- 각실 자수(안목치수 기준, 단위세대 평면도 첨부) : 단위세대 평면도 참조
- 마감재 리스트 : 별첨#1
- 주방가구, 창호 등의 브랜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임
- 방화문 마감 색상
  • 현관방화문 : 지정 도장마감
  • 대피공간 방화문 : 지정 일면 시트지마감
- 층간 방음재 설치여부 및 층간 슬라브 두께
  • 기준층기준 : 바닥완충재 30mm 설치, 슬라브두께 210mm
- 경관 조명 여부 : 없음
- 외벽 마감재(주거동 기준)
  • 각동별로 마감재 층이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지하층 노출부위	1~3층	2층~최상층	외부몰딩(4층)	비고
외벽	석재뿜칠	석재뿜칠,화강석	수성페인트	EPS 몰딩	
측벽	석재뿜칠	석재뿜칠,화강석	수성페인트	EPS 몰딩	

- 욕실바닥 난방 여부 : 샤워부스내부와 욕조하부를 제외한 욕실부위(세면대주위 등) 난방배관 있음
- 환기방법 : 2종 환기 시스템(강제급기, 자연배기)
- 발코니 수전 설치 위치 : 발코니 1,2에 설치
- 서라운드 잭 설치 여부 및 위치 : 거실에 설치
- 동작감지기 설치여부 및 위치 : 1,2층 및 최상층은 외부 창호 주변에 설치하고 기타층은 거실에 1개소 설치
- 홈네트워크 시스템 적용 범위 : 세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조명, 가스밸브차단, 난방제어 등을 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휴대폰 또는 인터넷으로 제어 가능
- 놀이터 바닥 재질 : 고무칩 포장
- 단지내(식재) 수목 종류 : 소나무, 느티나무, 백목련, 영산홍, 회양목 등
- 그 외 분양 시 설명하여야 할 사항 등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예정
  • 원격검침시스템 :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호별 방문없이 관리소에서 원격검침 및 사용량 조회가 가능
  • 무인경비시스템 : 세대비디오폰을 통해 공동현관 및 세대현관의 방문자 확인, 통화 및 출입문 개폐 기능을 통해 외부인 사전통제
  • 무인택배시스템 : 단지 내 설치된 택배함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택배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배달물 등을 수취,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
  • 차량출입통제시스템 : 입주자 차량은 통과하고, 외부차량은 통제하는 시스템
  • 디지털 방송 및 위성TV 수신시스템 : 디지털 방송은 물론, 무궁화 위성5,6호(KBS1, EBS+1, EBS+2, EBS-e,OUN)를 시청할 수 있음
  • CCTV 설치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놀이터, 단지 출입구1,2
  • 비상전원시스템 : 한전정전 시에도 세대내 거실벽부등, 보일러 가동 등이 가능
  • 일괄소등 스위치 : 외출 시 현관에 부착된 스위치로 승강기 호출, 가스밸브 잠금 및 거실등, 침실등 소등

Ⅸ 기타 사항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하는 분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하는 분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 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 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지체장애인
공용욕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변경, 좌식 샤워시설(욕조제거),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고 령 자 지체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지체장애인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지체장애인	주동 · 통로 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홍보관)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기한 : 계약 시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 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금액	감리회사
A-2	한국토지주택공사 (221-82-13374)	(주)보미종합건설 (114-81-64336) 혁존종합건설(주) (220-81-15483)	-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홍보관 및 분양홈페이지 안내

분양홍보관 (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



- **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36 (LH 분양홍보관)
  • 운영기간 : 2014.11.01.(토)부터 별도 안내 일까지 계속 (09:00 ~ 18:0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 오시는 길
  – 택시 : 반곡동 강원혁신도시 LH 분양홍보관
  – 버스 : 원주버스터미널 맞은편 6, 7번 승차 후 반곡동 LH 푸른숨4단지 하차 후 도보 2분
  • 주차안내 : 강원혁신도시 LH 분양홍보관 내
- **사이버모델하우스** • 웹페이지 : www.lhwja2.co.kr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분양홍보관 전화번호 : 033-735-6355

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 ·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 · 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 임업소득 · 어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 · 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 · 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 · 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또는 인)
본인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4.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동 양식은 www.lh.or.kr의 강원혁신도시사업단 A-2블록 10년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